

「제주4·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」에 의한
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방법 일부개정예규안

1. 개정이유

- 「제주4·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·정정의 절차를 가족관계등록예규에 반영하고,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족관계등록부 작성·정정 절차를 신설하고, 관련 규정을 정비함(안 제3조, 제4조 및 제10조부터 제21조까지)

3. 「제주4·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」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
방법 일부개정예규안

붙임과 같음

4. 신·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「제주4·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」에 의한
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방법 일부개정예규안

「제주4·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」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위원회의 결정 후 신청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람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을 신청할 수 있다.

제4조제3항을 삭제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가족관계등록부작성(정정)신청서(규칙 제4조 제1항의 별지 서식)”를 “가족관계등록부작성(정정)신청서(별지 서식)”로 한다.

제4장(제10조 및 제11조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장 출생신고한 부모와 위원회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결정을 받은
경우

제10조(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) ① 출생 기록이 되어 있는 자녀가 출생신고한 부 또는 모와 위원회의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결정을 받은 경우에는, 규칙 제3조 각 호의 사람이 제주4·3사건 희생자 가족관계등록부

작성(정정) 결정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한다.

② 가족관계등록관서는 친생자관계부존재가 확인된 자녀(다음부터 ‘사건본인’이라 한다)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하는 부 또는 모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한 후 그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.

③ 폐쇄 당시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하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사건본인에 관한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하고, 친생자관계가 존재하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사건본인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하지 아니한다.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 및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사건본인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하지 아니한다.

제11조(가족관계등록창설) ①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자녀는 위원회의 가족관계등록 창설결정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롭게 작성한다. 말소된 부모 대신에 진정한 부모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친생자관계존재 확인결정(결정 주문이 아닌 이유에 실시한 결정은 해당하지 아니한다)에 의한다.

② 가족관계등록관서는 가족관계등록부 작성(창설) 신청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롭게 작성할 때에 폐쇄등록부에 기록된 사항 중 친생자관계가 존재하는 부 또는 모의 특정등록사항, 혼인관계, 입양관계,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특정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이기한다.

③ 가족관계등록관서는 친생자관계가 남아있는 부 또는 모, 배우자 및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를, 사건본인의 폐쇄등록부와 연결을 끊고 새롭게 작성한 가족관계등록부와 직권으로 연결한다. 위원회의 가족관계등록부 창설결정으로 사건본인의 특정등록사항이 달라졌다면 배우자 및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사유를, 사건본인의 성과 본이 달라졌다면 직계비

속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사유를 직권으로 기록한다.

④ 가족관계등록관서는 새롭게 작성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명 및 출생연월일이 폐쇄등록부의 성명 및 출생연월일과 다르면 폐쇄등록부에 그 사유를 기록하고, 주민등록법 제14조에 따라 주민등록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.

제5장(제12조부터 제14조까지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장 출생신고하지 않은 부모와 위원회의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결정을 받은 경우

제12조(모와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한 경우) ① 부가 출생신고한 자녀가 등록부상 모와 위원회의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결정을 받은 경우 규칙 제3조 각 호의 사람이 제주4·3사건 희생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(정정) 결정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한다. 이 때 가족관계등록관서는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모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하고,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하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사건본인에 관한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한다.

② 등록부상 모를 말소한 후에는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고, 폐쇄등록부에 기록된 사항 중 위원회의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결정에 의한 말소사유를 제외한 기록사항을 직권으로 이기하여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.

③ 친생모를 기록하려면 위원회의 친생자관계존재 확인결정(결정주문이 아닌 이유에 실시한 결정은 해당하지 아니한다)에 의한 정정절차를 거쳐야 한다.

④ 제3항의 경우에 친생모가 유부녀임이 확인되면, 혼인 외 자의 가족관

계등록부에 친생모를 기록하기 위하여는 출생 당시 모의 법률상 배우자와 친자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.

제13조(부와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한 경우) 모가 혼인 중 자로 출생신고한 자녀가 등록부상 부와 위원회의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결정을 받은 경우 정정절차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때 친생부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인지결정을 받아야 한다.

제14조(그 밖의 경우) 가족관계등록창설의 사유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사람이 부, 모 또는 부모와의 사이에 위원회의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결정을 받은 경우 정정절차는 전 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6장(제15조 및 제16조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장 제적부의 정정

제15조(위원회의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결정 등) ① 위원회의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결정으로 제적부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한다.

② 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위원회의 가족관계등록부 창설결정을 원인으로 새롭게 작성하는 경우에는 자의 제적을 말소하고, 그 외의 경우에는 자의 제적을 말소하지 아니하고 신분사항을 정정한다. 자의 특정신분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배우자 및 자녀의 신분사항을 정정한다.

③ 위원회의 양친자관계존재 확인결정에 의한 제적부 정정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.

제16조(관할) ① 제적부의 정정은 본적지 관할 등록관서에서 한다.

②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접수한 등록관서는 다른 등록관서에서 제적부를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서류 등 사본을 작성하여 송부한다.

③ 제2항에 의해 제적부를 정정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도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접수한 등록관서에서 정정한다.

제7장(제17조 및 제18조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장 출생신고한 부(또는 모)와 위원회의 양친자관계존재 확인결정을
받은 경우

제17조(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) ① 출생 기록이 되어 있는 자녀가 출생신고를 한 부 또는 모와 위원회의 양친자관계존재 확인결정을 받은 경우에는, 규칙 제3조 각호의 사람이 제주4·3사건 희생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(정정) 결정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한다.

② 가족관계등록관서는 양친자관계존재가 확인된 자녀(다음부터 ‘양자’라 한다)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양친자관계가 존재하는 부 또는 모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한 후 그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.

③ 양친자관계가 존재하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양자에 관한 친생자기록을 양친자기록으로 정정하고, 양자의 출생신고일자를 입양신고일자로 기록한다. 친생자관계가 존재하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양자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하지 아니한다. 양자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 및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양자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하지 아니한다.

제18조(가족관계등록부창설) ①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자녀에 대한 위원회의 가족관계등록 창설결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 처리절차는 제11조를 준용한다.

② 가족관계등록관서는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양친자관계를 기록하

고, 양자의 특정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양부 또는 양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사유를 직권으로 기록한다.

제8장(제19조 및 제20조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장 출생신고하지 않은 부(또는 모)와 위원회의 양친자관계존재
확인결정을 받은 경우

제19조(모와 양친자관계가 존재한 경우) ① 친생부가 출생신고한 자녀가 등록부상 친생모와 위원회의 양친자관계존재 확인결정을 받은 경우 규칙 제3조 각호의 사람이 제주4·3사건 희생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(정정) 결정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한다.

② 양친자관계가 존재하는 모와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친생자관계에서 양친자관계로 정정하고, 양자의 등록부상 출생신고일자를 입양신고일자로 기록한다.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고, 폐쇄등록부에 기록된 사항 중 위원회의 양친자관계존재 확인결정에 의한 말소사유를 제외한 기록사항을 직권으로 이기하여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.

③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모를 기록하는 절차는 제1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.

제20조(부와 양친자관계가 존재한 경우) 친생모가 혼인 중 자로 출생신고한 자녀가 등록부상 친생부와 위원회의 양친자관계존재 확인결정을 받은 경우 정정절차는 이 예규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때 친생부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인지결정을 받아야 한다.

제9장(제21조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장 호적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 제적부가 없는
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

제21조(제적부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) ① 법 제12조에 의하여 호적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 제적부가 없는 희생자(이하 “제적부 없는 희생자”라 한다)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결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때 희생자 본인에 대해서만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.

② 제적부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결정에 첨부된 신분표에 희생자의 부모가 기록된 경우에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에 부모의 성명, 출생연월일, 성별, 본을 기록한다.

③ 제적부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에 배우자 및 자녀를 기록하지 아니한다.

④ 희생자의 성명(姓名)·성(姓)·명(名)이 미상인 경우 특정등록사항란에 미상인 사항은 기록하지 아니하고, 일반등록사항란에 성명(또는 성, 명) 미상으로 기록한다.

⑤ 제적부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희생자 명부번호를 기록한다.

⑥ 제적부 없는 희생자의 등록기준지는 부 또는 모의 종전 호적의 본적으로 할 수 있다.

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예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<별지1>

사 건 본 인	성명	한글	(성) / (명)	성별	<input type="checkbox"/> 남 <input type="checkbox"/> 여
		한자	(성) / (명)	주민등록번호	-
			출생연월일		
	등록기준지				
	주소				
정정 사항	“별지 첨부 결정주문과 같음”				
사 건 본 인	성명	한글	(성) / (명)	성별	<input type="checkbox"/> 남 <input type="checkbox"/> 여
		한자	(성) / (명)	주민등록번호	-
			출생연월일		
	등록기준지				
	주소				
정정 사항	“별지 첨부 결정주문과 같음”				
사 건 본 인	성명	한글	(성) / (명)	성별	<input type="checkbox"/> 남 <input type="checkbox"/> 여
		한자	(성) / (명)	주민등록번호	-
			출생연월일		
	등록기준지				
	주소				
정정 사항	“별지 첨부 결정주문과 같음”				
사 건 본 인	성명	한글	(성) / (명)	성별	<input type="checkbox"/> 남 <input type="checkbox"/> 여
		한자	(성) / (명)	주민등록번호	-
			출생연월일		
	등록기준지				
	주소				
정정 사항	“별지 첨부 결정주문과 같음”				
사 건 본 인	성명	한글	(성) / (명)	성별	<input type="checkbox"/> 남 <input type="checkbox"/> 여
		한자	(성) / (명)	주민등록번호	-
			출생연월일		
	등록기준지				
	주소				
정정 사항	“별지 첨부 결정주문과 같음”				

<별지2>

인 지	⑥ 사건 본인 (피인지자)	성명	한글 (성 / (명)	성별	①남 ②여
			주민등록번호	-	
		한자 (성 / (명)	출생연월일		
		등록기준지			
	주소				
	모의 성명 및 등록기준지	성 명		주민등록번호	-
		등록기준지			
	⑦ 사건 본인 (인지자)	성명	한글 (성 / (명)	성별	①남 ②여
			주민등록번호	-	
		한자 ((성) / (명)	출생연월일		
등록기준지					
⑧기타 사항					

작성방법

- ⑥란: 모의 성명 및 등록기준지란은 부(父)가 인지한 경우에만 기재합니다.
 :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경우에는 출생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.
- ⑧란: 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 데에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.
- 사망한 자녀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피인지자의 사망연월일, 그 직계비속의 성명, 출생연월일 및 등록기준지
 - 피인지자에게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성명(한글·한자 병기), 출생연월일, 부모성명, 피인지자와의 관계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의신청서의 접수 등) ① (생 략) <u>②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이 되어야 할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신청서에 의하여야 한다.</u> ③ (생 략) <u><신 설></u></p> <p>제4조(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방식 등) ①·② (생 략) <u>③ 가족관계(폐쇄)등록부에 기록할 사항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의 신청서에 분명하게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첨부서류 등에 의하여 그 내용이 소명되는 때에는 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.</u></p> <p>제6조(행정조치 등) ① 시(구)·읍·면의 장은 <u>가족관계등록부작성(정정)신청서(규칙 제4조 제1항의 별지 서식)</u>를 민원창구에 비치하여야 한다. ② (생 략)</p>	<p>제3조(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의 신청서의 접수 등) ① 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 <u>④ 위원회의 결정 후 신청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람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을 신청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4조(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방식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</p> <p>제6조(행정조치 등) ① ----- ----- <u>가족관계등록부작성(정정)신청서(별지 서식)</u> ----- 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</p>

<신 설>

<신 설>

제4장 출생신고한 부모와 위원회의
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결정을 받은
경우

제10조(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) ①
출생 기록이 되어 있는 자녀가 출
생신고를 한 부 또는 모와 위원회
의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결정을
받은 경우에는, 규칙 제3조 각 호
의 사람이 제주4·3사건 희생자 가
족관계등록부 작성(정정) 결정서를
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
청을 한다.

② 가족관계등록관서는 친생자관
계부존재가 확인된 자녀(다음부터
'사건본인'이라 한다)의 가족관
계등록부에 친생자관계가 부존재
하는 부 또는 모의 특정등록사항을
말소한 후 그 가족관계등록부를 폐
쇄한다.

③ 폐쇄 당시 친생자관계가 부존재
하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
에는 사건본인에 관한 특정등록사
항을 말소하고, 친생자관계가 존재
하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
에는 사건본인의 특정등록사항을
말소하지 아니한다. 배우자와 자녀
가 있는 경우 배우자 및 자녀의 가
족관계등록부에도 사건본인의 특

<신 설>

정등록사항을 말소하지 아니한다.

제11조(가족관계등록창설) ①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자녀는 위원회의 가족관계등록 창설결정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롭게 작성한다. 말소된 부모 대신에 진정한 부모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친생자관계존재 확인결정(결정 주문이 아닌 이유에 실시한 결정은 해당하지 아니한다)에 의한다.

② 가족관계등록관서는 가족관계등록부 작성(창설) 신청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롭게 작성할 때에 폐쇄등록부에 기록된 사항 중 친생자관계가 존재하는 부 또는 모의 특정등록사항, 혼인관계, 입양관계,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특정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이기한다.

③ 가족관계등록관서는 친생자관계가 남아있는 부 또는 모, 배우자 및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를, 사건본인의 폐쇄등록부와 연결을 끊고 새롭게 작성한 가족관계등록부와 직권으로 연결한다. 위원회의 가족관계등록부 창설결정으로 사건본인의 특정등록사항이 달라졌다면 배우자 및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사유를, 사건본인의 성과 본

<신 설>

<신 설>

이 달라졌다면 직계비속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사유를 직권으로 기록한다.

④ 가족관계등록관서는 새롭게 작성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명 및 출생연월일이 폐쇄등록부의 성명 및 출생연월일과 다르면 폐쇄등록부에 그 사유를 기록하고, 주민등록법 제14조에 따라 주민등록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.

제5장 출생신고하지 않은 부모와 위원회의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결정을 받은 경우

제12조(모와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한 경우) ① 부가 출생신고한 자녀가 등록부상 모와 위원회의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결정을 받은 경우 규칙 제3조 각 호의 사람이 제주4·3사건 희생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(정정) 결정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한다. 이 때 가족관계등록관서는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모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하고,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하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사건본인에 관한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한다.

② 등록부상 모를 말소한 후에는

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고, 폐쇄등록부에 기록된 사항 중 위원회의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결정에 의한 말소사유를 제외한 기록사항을 직권으로 이기하여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.

③ 친생모를 기록하려면 위원회의 친생자관계존재 확인결정(결정주문이 아닌 이유에 설시한 결정은 해당하지 아니한다)에 의한 정정절차를 거쳐야 한다.

④ 제3항의 경우에 친생모가 유부녀임이 확인되면, 혼인 외 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모를 기록하기 위하여는 출생 당시 모의 법률상 배우자와 친자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.

<신 설>

제13조(부와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한 경우) 모가 혼인 중 자로 출생신고한 자녀가 등록부상 부와 위원회의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결정을 받은 경우 정정절차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때 친생부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인지결정을 받아야 한다.

<신 설>

제14조(그 밖의 경우) 가족관계등록 창설의 사유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사람이 부, 모 또는 부모와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의 사이에 위원회의 친생자관계부
존재 확인결정을 받은 경우 정정절
차는 전 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6장 제적부의 정정

제15조(위원회의 친생자관계부존재
확인결정 등) ① 위원회의 친생자
관계부존재 확인결정으로 제적부
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족관
계등록부 정정절차에 따라 가족관
계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한다.

② 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위원회
의 가족관계등록부 창설결정을 원
인으로 새롭게 작성하는 경우에는
자의 제적을 말소하고, 그 외의 경
우에는 자의 제적을 말소하지 아니
하고 신분사항을 정정한다. 자의
특정신분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
그 배우자 및 자녀의 신분사항을
정정한다.

③ 위원회의 양친자관계존재 확인
결정에 의한 제적부 정정에는 제1
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.

제16조(관할) ① 제적부의 정정은 본
적지 관할 등록관서에서 한다.

②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접
수한 등록관서는 다른 등록관서에
서 제적부를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
에 신고서류 등 사본을 작성하여

<신 설>

<신 설>

송부한다.

③ 제2항에 의해 제적부를 정정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도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접수한 등록관서에서 정정한다.

제7장 출생신고한 부(또는 모)와 위원회의 양친자관계존재 확인결정을 받은 경우

제17조(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) ①

출생 기록이 되어 있는 자녀가 출생신고를 한 부 또는 모와 위원회의 양친자관계존재 확인결정을 받은 경우에는, 규칙 제3조 각호의 사람이 제주4·3사건 희생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(정정) 결정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한다.

② 가족관계등록관서는 양친자관계존재가 확인된 자녀(다음부터 ‘양자’라 한다)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양친자관계가 존재하는 부 또는 모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한 후 그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.

③ 양친자관계가 존재하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양자에 관한 친생자기록을 양친자기록으로 정정하고, 양자의 출생신고일자를

입양신고일자로 기록한다.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양자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하지 아니한다. 양자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 및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양자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하지 아니한다.

<신 설>

제18조(가족관계등록창설) ①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자녀에 대한 위원회의 가족관계등록 창설결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 처리 절차는 제11조를 준용한다.

② 가족관계등록관서는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양친자관계를 기록하고, 양자의 특정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양부 또는 양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사유를 직권으로 기록한다.

<신 설>

제8장 출생신고하지 않은 부(또는 모)와 위원회의 양친자관계존재 확인 결정을 받은 경우

<신 설>

제19조(모와 양친자관계가 존재한 경우) ① 친생부가 출생신고한 자녀가 등록부상 친생모와 위원회의 양친자관계존재 확인결정을 받은 경우 규칙 제3조 각호의 사람이 제주 4·3사건 희생자 가족관계등록부

작성(정정) 결정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한다.

② 양친자관계가 존재하는 모와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친생자관계에서 양친자관계로 정정하고, 양자의 등록부상 출생신고일자를 입양신고일자로 기록한다.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고, 폐쇄 등록부에 기록된 사항 중 위원회의 양친자관계존재 확인결정에 의한 말소사유를 제외한 기록사항을 직권으로 이기하여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.

③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모를 기록하는 절차는 제1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.

제20조(부와 양친자관계가 존재한 경우) 친생모가 혼인 중 자로 출생신고한 자녀가 등록부상 친생부와 위원회의 양친자관계존재 확인결정을 받은 경우 정정절차는 이 예규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때 친생부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인지결정을 받아야 한다.

제9장 호적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 제적부가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

제21조(제적부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계등록부 작성) ① 법 제12조에 의하여 호적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 제적부가 없는 희생자(이하 “제적부 없는 희생자”라 한다)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결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때 희생자 본인에 대해서만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.

② 제적부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결정에 첨부된 신분표에 희생자의 부모가 기록된 경우에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에 부모의 성명, 출생연월일, 성별, 본을 기록한다.

③ 제적부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에 배우자 및 자녀를 기록하지 아니한다.

④ 희생자의 성명(姓名)·성(姓)·명(名)이 미상인 경우 특정등록사항란에 미상인 사항은 기록하지 아니하고, 일반등록사항란에 성명(또는 성, 명) 미상으로 기록한다.

⑤ 제적부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희생자 명부번호를 기록한다.

⑥ 제적부 없는 희생자의 등록기준지는 부 또는 모의 종전 호적의 본적으로 할 수 있다.

<의안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	
연락처	(02) 3480-1771